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국민주권이념에 입각하여 광주광역시서구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사회단체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와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1 내지 제10조의18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심의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의 처리(시행)주체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 하에 있는 합의제기관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조로 규율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구 조례의 규율사항은 감사청구의 주민 수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의 수는 178,671명으로서 50분의 1인 3,573명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 제2조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의 경우도 우리 구와 동일하나 대구광역시서구(300명 이상)나 인천광역시남구(300명 이상)보다는 더 많은 주민의 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정하더라도 과다하고 무리한 주민 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고, 과소하게 책정할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의 남용·남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이 감사청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 동일한 광역시 자치구간에 감사청구인수가 다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